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9.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 국민의 여가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창군 노동계곡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수탁자의 선정·협약·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9조, 제11조)
- 마.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아. 시설사용료·감면 및 면제·예약·징수방법·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자. 사용자의 준수사항·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제25조)

□ 참고사항

- 가. 조례안 : 붙임
- 나.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다.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 : '09. 3. 2 ~ 3.21(20일간)실시, 제출된 의견 없음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8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장료”란 물놀이·휴식 등을 위하여 캠핑장 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숙박시설(캐빈하우스, 통나무집, 카라반), 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다목적운동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란 관련법령에 의한 수첩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9.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 포함)
11.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

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시설) ①캠핑장은 군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 숙박 및 야영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②캠핑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숙박시설(캐빈하우스, 통나무집, 카라반 등)
2. 캠핑시설(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등)
3. 다목적운동장 및 야외무대
4. 주차장, 화장실, 급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

제5조(적용) 캠핑장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캠핑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③제2항에 의한 수익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캠핑장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3. 캠핑장과 관련한 책임능력 및 전문성(경력)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6. 기타 캠핑장과 관련한 사항 등

제8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관광개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은 군의원 1명, 관계공무원 4명, 관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관·단체명
3. 위탁대상 재산·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 6.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수탁자는 협약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수탁자는 캠핑장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시설관리 업무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때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캠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입장료) ①물놀이·휴식 등을 위해 캠핑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입장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사용료) ①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②시설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은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료 감면 및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입장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군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단순통행자 및 행사에 참여하는 자

4. 만 6세 미만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5.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6. 숙박시설, 카라반사이트, 오토캠핑장 이용자
7. 기타 군수가 입장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가. 평창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나. 평창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을 위해 캠핑장을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가. 평창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 나.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 체류자가 사용하는 경우
 - 다.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군 직영관리시)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군 직영관리시)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①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캠핑장의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1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시설의 사용제한) ①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3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관리자 및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변상책임) 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3장 보칙

제26조(준용) 캠핑장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평창군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15조 및 제16조 관련)

1. 입장료

대 인	소 인	비 고
2,000원	1,000원	○ 소인은 7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해당됨

※ 입장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기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 일	
캐빈하우스	4인/1일	120,000	100,000	80,000	정원초과시 추가요금 별도부담
통나무집	4인/1일	100,000	80,000	60,000	
카라반	1대당/1일	100,000	80,000	50,000	
캐라반사이트	1개소/1일	20,000	20,000	15,000	
오토캠핑장	1개소/1일	10,000	10,000	10,000	
평상	1회당/1일	10,000	10,000	5,000	
샤워장	1회당/1일	2,000	2,000	2,000	어린이는 1,000원

-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어린이 이상) 5,000원 추가징수
-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 ※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별표 2]

시설사용(입장)권(제20조 관련)

<p>NO ~</p> <p>캠핑장시설사용(입장)권(원부)</p> <p>● 사용(입장)료 : (금 원정)</p> <p>● 사용시설 :</p> <p>● 사용기간 : ~</p> <p>● 사용자</p> <p>- 주소 :</p> <p>- 성명 : 외 인</p> <p>위와 같이 시설사용(입장)료를 징수하였음.</p> <p>20 년 월 일</p> <p>노동계곡 오토캠핑장</p>	<p>NO ~</p> <p>캠핑장시설사용(입장)권(사용자보관용)</p> <p>● 사용(입장)료 : (금 원정)</p> <p>● 사용시설 :</p> <p>● 사용기간 : ~</p> <p>● 사용자</p> <p>- 주소 :</p> <p>- 성명 : 외 인</p> <p>위와 같이 시설사용(입장)료를 납부하였음.</p> <p>20 년 월 일</p> <p>노동계곡 오토캠핑장</p>
--	--

- ※ 전면 : 캠핑장 전경 또는 평창군 주요관광지 및 군 홍보문안 기재
- ※ 후면 : 시설현황 안내도 또는 캠핑장내 금지(유의)사항 등 기재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21조 관련)

구 분	내 용	반환 기준		비 고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숙박시설(캐빈하우스, 통나무집, 카라반 등) 캠핑시설(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등) 샤워장 등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반환	
숙박시설(캐빈하우스, 통나무집, 카라반 등) 캠핑시설(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등) 샤워장 등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별표 4]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24조 관련)

이곳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자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자 동 차

- 자동차의 출입은 23:00부터 07:00까지는 가능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밭의 차량 진입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 재

-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흥 보

-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①~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①행정재산등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22조(사용료)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 예금 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등을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2. 당해 행정재산 등의 관리를 대만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등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④(생략)

제26조(청문)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 대체,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①건물·선박·공작물 및 중요한 기계와 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은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및 전대)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때
3. 그 밖에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에 사용·수익허가의 재산이 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③(생략)

제14조(사용료)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생략)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①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 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전에 정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수 있다.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를·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징수하여 관리에 소요 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⑥항 생략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하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제16조제2항에 따른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